

제25차 유엔 인권이사회의 북한인권 결의를 환영하고, 대한민국 정부에게 북한인권 상황을 기록·보존할 유엔 「현장기반조직(field-based structure)」의 유치를 강력히 촉구한다.

유엔 인권이사회는 지난 3월 28일(현지시간)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의 보고서를 유엔 안보리에 제출하고 책임자 규명을 위해 이 문제를 국제 형사사법 메커니즘에 회부하는 것 등을 골자로 한 북한 인권 결의안을 압도적 다수의 찬성으로 채택하였다.

유엔 인권이사회는 이 결의안에서 먼저 북한에 대하여 장기간에 걸친 조직적이고 광범위하며 심각한 인권침해 상황을 강력히 규탄하고, COI 보고서의 권고사항을 이행함으로써 모든 인권침해를 즉각 중지할 것을 촉구하였고, 특히 북한의 인권침해 가해자들에 대하여 처벌이 이루어지지 않은 채 북한의 최고위층에서 결정된 정책에 따라 수십 년간 반인도범죄(crimes against humanity)가 자행되고 있는 점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명하고, 국제형사재판소(ICC)를 직접 거론하지는 않았지만, 반인도범죄 가해자들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안보리가 이들을 국제 형사사법 메커니즘에 회부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하였다.

아울러 모든 국가에 대하여 탈북자들에 대한 강제송환 금지 원칙을 준수할 것을 요구하였고, 북한인권 특별보고관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동시에 북한의 인권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기록하여 그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유엔인권최고대표(OHCHR) 산하에 현장 기반조직(field based structure)을 설치할 것을

요청하였다.

결의안은 또한 북한인권 특별보고관의 임기를 1년 연장하고, 북한인권 특별보고관이 인권이사회와 총회에서 COI 권고사항 이행에 대해 정기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하였으며, 이와 함께 북한과 관계있는 모든 국가들이 정치범 수용소 폐쇄 등을 포함한 모든 인권침해 상황 종식을 위해 북한이 즉각적 조치를 취하도록 영향력을 발휘할 것을 권고하였다.

유엔 인권이사회는 이와 같은 결의는, 우리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의 북한인권 관련 상황인식 및 추구대책과도 일치하는바,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가 북한에 대한 접근이 불가능한 상황에서도 피해자들의 증언청취, 위성사진을 통한 증거수집 등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하여 투명하고 객관적인 조사를 수행한 결과를 전폭적으로 인정하고 국제사회가 이 문제에 용기 있게 개입할 것을 선언한 엄중한 인류양심의 표명이므로,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은 경의를 표함과 동시에 이를 적극 환영하는 바이다.

나아가 유엔 인권이사회는 탈북자들의 증언을 기록하는 등 북한의 인권상황을 지속적으로 관찰하고 각종 증거를 생산·보존하게 될 현장기반조직(field based structure)을 태국이나 한국에 두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바, 이러한 국제기구를 한국에 설치하는 것은 그 자체로 상징적 의미가 크고 실제 기능 활성화와 북한인권 개선의 효과 면에서도 절대적으로 유리하므로, 우리 정부가 온 국민과 더불어 이 조직을 한국에 유치하는 데 적극 나설 것을 강력하게 촉구하는 바이다.

2014년 4월 1일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한변)

상임대표 김 태 훈